

#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47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2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,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·운영하도록 하며,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, 그 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, 용어 등을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협의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(30명→40명)함(안 제3조제1항).
-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5항).
-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도록 수정함(안 제6조제2항).
-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, 용어 등을 수정함(안 제2조제6호, 안 제3조제1항, 안 제11조).

##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4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지명”을 “임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출할”을 “제출하는”으로, “자를 당해 협의회”를 “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안 제11조 중 “여행”을 “출장”으로 하고, “예산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<u>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</u> 중에서 시장이 <u>지명</u>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경제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<u>자</u></p> <p>4.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<u>자</u></p> <p>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제출할</u>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<u>자를 당해 협의회</u>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~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<u>4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</u>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경제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</p> <p>4.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<u>사람</u></p> <p>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제출하는</u>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<u>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</u>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
제6조(회의개최) ① (생략)

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·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개최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·외를 출장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·자치구·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4.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
  2. 자치구의 부구청장
  3. 경제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
  4.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
-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간사)**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.

**제6조(회의개최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의안의 제출)**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

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안건의 배부)**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견의 청취)**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10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**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·외를 출장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실무위원회)**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